

「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추은희 의원 외 6인

2. 찬 성 자: 김영태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,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범위 및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(안 제5조~제6조)
- 예산지원 등(안 제7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·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보상사업을 통해 일부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나, 부직포·반사필름 등 비보상 품목은 농가 자체 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불법 소각 및 무단 방치가 이뤄지고 있음.
- 조례의 제정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산불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폐기물 보관시설을 구역별로 확충하여 마을 단위 집하·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며, 분리 방법에 대한 교육·홍보의 실시로 주민들의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비보상 품목의 수거 방법과 관련하여, 민간업체 위탁 수거 또는 환경자원화시설 집합 수거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거 체계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.